

배포 2023. 10. 6.(금)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3.10.6.(금) 11:00  
(지 면) 2023.10.6.(금) 11:00

##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으로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한다

- 10월 6일(금),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 개최
-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 공유
-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내 제도 개선 완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여 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에,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하여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용 권한도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하고,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한다.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정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11월 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 < \* 5개 법령 입법예고 기간 >

성격	관련 법령	소관	입법예고 기간
대통령령	「국립학교 설치령」	교육부	10.6.(금) ~ 10.27.(금), 21일 간
	「한국교원대 설치령」		
	「방송대 시행령」		
	「국립학교 정원규정」	행안부	10.17.(금) ~ 10.27.(금), 10일 간
부령 「국립학교 정원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으로,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새로운 사무국장 인사제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 개요

#### 2.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주요내용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인사)	책임자	과 장	정원숙 (044-203-6110)
		담당자	서기관	하진혜 (044-203-6134)
혁신행정담당관(조직, 정원)	혁신행정담당관(조직, 정원)	책임자	과 장	이주희 (044-203-6066)
		담당자	서기관	김진홍 (044-203-6063)

**붙임1****국립대학 총장 간담회 개요****□ 개요**

- (일시) 2023. 10. 6.(금) 11:00 ~ 11:50 (50분)
- (장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국립대학 영상
- (참석자) 총 34명
  - (교육부) 부총리, 기획조정실장, 인재정책실장, 대변인, 대학규제 혁신국장,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 (국립대학) 강릉원주대학교 반선섭 총장 외 26명 ※ 일부 대면 참석
- (주요내용)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 관련 제도개선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 공유

**□ 세부 일정** ※ 인사 말씀 이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1:00~	· 간담회 시작	※ 사회: 운영지원과장
11:00~11:05	(5') · 참석자 소개	운영지원과장
11:05~11:10	(5') · 부총리 인사 말씀	<b>부총리</b>
11:10~11:25	(15') ·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선 방향 ·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일정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11:25~11:45	(20') · 자유토론	
11:45~11:50	(5') · 마무리	<b>부총리</b>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2****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주요내용****1. 법령개정 주요내용 (총 5개 법령)**

관련 법령	성격	주요내용	소관
「국립학교 설치령」 「교원대 설치령」 「방송대 시행령」	대통령령	- 사무국장 보임 가능 대상 변경 및 수행 사무 확대 -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용권 부여	교육부
「국립학교 정원규정」		- 공무원 정원 감축 및 별정직 증원	행안부
「국립학교 정원규정 시행규칙」	부령	- 공무원 정원 감축 및 별정직 증원	교육부

**2. 제도개선 세부내용****① 사무국장 직위 개방****< '교수' 사무국장 >**

- (형태)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과 같이 국립대학 내 전임교원(교수 또는 부교수)이 사무국장 직위를 '겸임'
- (임용절차) 총장이 원하는 '교수(또는 부교수)'에게 '사무국장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전임교원이 사무국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 '민간 전문가' 사무국장 >**

- (형태) 민간 전문가 등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임용
  - \*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 (임용절차) 별정직 사무국장의 채용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모든 인사권을 국립대 총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임용 권한 전면 부여

- (임기) 1년으로 하되, 당해 총장 임기 내에서 연임 가능

※ 관련 법령에 별정직 사무국장 임용권, 채용절차, 임기 등 관련 조문 신설

## ② 정원 조정 등 행정사항

- (정원 조정) 기존 사무국장 직위에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총 27명 : 고위공무원단 국장급 18명, 3급 상당 9명) 전면 감축
  - 민간 개방을 위한 별정직 공무원 정원 총 27명 증원(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8명, 별정직 3급 상당 9명)
- (가이드 배포)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방식, 절차, 대상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제도개선 완료시)